

의안
번호

193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10. 17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권영애 의원 외 21명

나. 의안번호 : 제193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09. 26.

라. 회부일자 : 2023. 10. 12.

2. 제안이유

- 우리 구 평생학습관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, 상위법에 따라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며,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했던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 등을 추가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려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 부여(안 제2조제3항)
- 나.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추가(안 제2조제4항)
- 다.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(안 제4조 등)
- 라.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신설(안 제6조의2)
- 마.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지원, 동 평생 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사항 추가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,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3. 09. 26. ~ 2023. 10. 01.
 - 의 견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평생교육법」(이하“법”라 한다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, 평생학습관 기능에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안 제2조(평생교육의 진흥)는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 부여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 해독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역할을 추가한 것으로, 「법」 제5조1)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, 「법」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-
- 1) 「**평생교육법**」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6. 8.>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5. 29.>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4. 23.>

제39조(문해교육의 실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안 제6조의2(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 및 부칙 제1조는 「법」 제21조의3 개정으로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「법」 시행에 맞춰 2024년 4월 19일로 부칙 제1조 단서에 시행일을 명시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.

〈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의3 개정 전·후 비교〉

개정 전	개정 후
제21조의3(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 ①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읍·면·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<u>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	제21조의3(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 ①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읍·면·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<u>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</u> <2023. 4. 18.> [시행일: 2024. 4. 19.]

- 안 제8조(평생학습관의 기능)는 개정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, 제6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 기능에 장애인·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지원,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·지원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, 이는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〈안 제4조 개정 전·후 비교〉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평생학습센터의 기능) 1.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2.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. 평생학습 관련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4.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	제4조(평생학습관의 기능) 1.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2.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<u>2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 지원</u> <u>2의3.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</u>

5. 독서·외국어·건강·교육·교양 등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	<u>개발·운영 지원</u>
6.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	3.~7.(현행과 같음)
7.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	<u>8. 제6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</u>
8.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9.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그 밖에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“평생학습센터”의 명칭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“평생학습관”으로 변경한 것이며, 현재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관²⁾으로 명칭 하여 운영하고 있음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볼 때,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평생교육 지원활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되며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2) 성북구평생학습관 현황

- 개 관 일 : 2012. 2. 2. (학습도시 지정 2005년)
- 시설위치 : 성북구 종암로 167, 동일하이빌 업무동 3층(하월곡동 230)
- 시설내용 : 강의실3, 동아리실2, 다목적실1, 사무실1, e-스튜디오실, 창고
- 인력구성 : 6명(행정6급 2명, 행정7급 1명, 임기제8급 2명,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명)
- 운영방법 : 직영 * 직영 21개구/위탁 2개구(강남구, 은평구)/미설치 2개구(광진구, 중구)
- 전체예산 : 524,890천원(국비10,400 시비 35,200 구비 479,290)
* 학습관 시설예산 129,600천원 / 관리비 700만원